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어르신복지과장 : 강해라 ☎ 2133-7400 어르신여가팀장 : 박귀상 ☎ 7412 담당 : 박광호 ☎ 7417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의2(법령의 제개정 건의사항 보고)

□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개선 (어르신복지과, '25.7.29.)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현행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로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현행 법령상 시설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로서 행정처분 부과 시 1~2차 개선명령 후 3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가 가능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발생 시 1차 개선명령, 2차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건의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	(보건복지부)